

4차산업기술교육원 규정

□ 제정 : 2020. 7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4차산업기술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4차산업기술교육원은 본교의 체계적인 4차산업 기술교육지원과 산업체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교육을 통한 재직자 및 학생의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의 비전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수립 및 개선
2. 4차산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
3. 산업체가 요구하는 4차산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4. 실무기반 교수학습환경, 시스템, 매체 개발 및 지원
5. 기타 4차산업 실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실무교육 관련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원장) ① 4차산업기술교육원장(이하 “원장”)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4차산업기술교육원을 대표하며, 4차산업기술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구성) ① 4차산업기술교육원에는 스마트팩토리기술인력센터,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를 둔다.

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센터의 업무 수행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센터 단위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④ 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) 4차산업기술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4차산업기술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,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스마트팩토리기술인력센터, 인공지능기술인력센터의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이며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4차산업기술교육원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4차산업기술교육원 제반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
3. 4차산업기술교육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4. 그 외 4차산업기술교육원의 제반 정책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충당한다.

제10조(예산 및 결산) 본 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해산) 본 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